

“환경호르몬농약”을 생각한다

기초자료 작성단계로 과학적 증거 못찾아
현 농약잔류검사 체계 감안, 불안감 벗어나야

홍보부



리는 매일 수 많은 문명의 이기속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편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고마움을 평가하는데는 너무나 인색한 반면 부작용에 대한 비판은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고 없음을 떠나 지나치리 만큼 가혹하다.

요즈음 내분비계 장애물질, 소위 환경호르몬이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각 언론매체가 보도에 앞다퉈를 하고 있다. 어떤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정상적인 생체기능을 교란시켜 건강을 위협한다면 분명히 그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용도를 제한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올바른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보도는 과학적 사실 또는 정부조치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소비자의 흥미를 북돋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선진국도 기초자료 수집단계

정부는 세계야생생물기금(WWF)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하고 있는 67개물질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전문연구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농약과 관련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금년 8월부터 스크리닝에 착수하여 2000년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일본 역시 전문가들로 실무조사단 및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를 파악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같이 각국은 우선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개개 물질의 정확한 작용기작이나 분석방

법 등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들 물질이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를 아직은 찾지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단계에 있는 농약을 “환경호르몬”으로 단정하여 농업인이나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을 벼랑의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

농약, 개발단계서 기형·변식장애 검토

더욱이 농약은 개발단계에서 3대(親子孫)에 걸쳐 다음 세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번식시험, 선천성 기형가능성을 검사하는 초기형성 시험을 하고 있으며 유전자에 어떤 변형을 일으키지는 않는가를 변이원성시험을 통해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농약으로 등록이 허가되기 때문에 농약에 의한 변식장애나 기형아 생산의 우려는 일단 검증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섣부른 규제는 국제마찰 초래할 수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중 농약에 관한 사항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여 과학적으로 명백한 결과를 도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대책을 촉구하는 언론의 분위기에 밀려 임기응변식의 처방을 마련한다면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잘못과 같은 식량자급붕괴라는 큰 화를 차초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규제를 하지 않은 농약을 국내에서 앞장서 규제조치를 취한다면 외국산 수입농산물에도 대등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WTO체제하에서 농산물의 수입

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과학적 자료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정에 의한 규제는 불필요한 국제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많다.

섭취단계의 농약잔류량은 무시할 수준

끝으로 농산물중 농약잔류문제에 소비자가 지나치게 큰 불안감을 갖는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일 섭취허용량은 동물실험에서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자신은 물론 후손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양을 구한 후 보통 그 양의 1/100(안전계수라 함)을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나라의 식생활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에서 1일 섭취허용량을 기준으로 농산물별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잔류량을 검사할 때는 시장에 유통중인 것을 임의로 수집하여 흙만을 털어 낸 후 분석을 한다.

따라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물에 씻거나, 끓이거나, 김치를 담구는 등 조리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우리가 먹는 단계에서의 농약잔류량은 거의 무시할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농업인이 농약의 마지막 사용시기와 총 사용횟수를 규정한 안전사용기준을 무시한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농약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분석체계를 확립하거나 출하전 검사방법의 도입을 과감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소비자도 우리나라의 농약잔류검사체계는 “시장바구니조사”방법으로 농산물중에 남아있는 잔류량이 바로 섭취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나친 불안감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약정보**

